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1건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용어 현행화 : 1건
 - 「농지법」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 1건
 - 「농지법」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 940-8606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희 진
	조 직 팀 장	이 은 경
	담 당 자	조 창 휘

[별표]

위 임 사 무 명 (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사항 ②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부터 제7조의1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 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읍·면 읍·면·동
노인 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2.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①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대장 이송 및 보관 ④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법」 제50조	읍·면 읍·면 동 (교하동, 금촌3동에 한함) 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부동산과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읍·면·동
하천관리과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하천관리과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7. 「소하천정비법」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 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 「소하천정비법」 제17조 · 제27조	읍 · 면 읍 · 면 읍 · 면
자원순환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 · 면 · 동 읍 · 면 · 동
건축 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읍 · 면 읍 · 면 읍 · 면 읍 · 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 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읍·면·동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 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 「건축법」 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과주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과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현행 별표]

위 임 사 무 명 (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부터 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부터 제6조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읍·면 읍·면·동
복지지원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노인 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읍·면 읍·면 읍·면
농업정책과	1.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2.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관리 ②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③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④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	읍·면 읍·면 읍·면·동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부동산과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②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읍·면·동
하천관리과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 같은 법 제8조6항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제7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21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하천관리과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3호	읍·면
	7.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	① 토지의 점용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2호	읍·면 읍·면
		② 양도·양수의 허가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③ 상속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8. 제1호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22조·제23조	읍·면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읍·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16조	읍·면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읍·면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읍·면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 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18조	읍·면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9.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건축 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건축법」 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 상은 제외)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 만,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 · 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 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같은 법 제1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 에 따른 수수료의 징 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의 권한 2. 자동차관리법 위반 ,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신 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부 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 과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4항 18호, 18의2 호, 18의3호, 제5항 제6의2 호	읍·면·동 읍·면·동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54)

1. 행정지원과-28913(2026.10.07)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가 족 과 장 김영미

여성정책전문위

원 권문영

여성정책팀장

조영라

여성가족과장

2026. 10. 8.

김영미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20058

(2026. 10. 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yjihee@korea.kr

/ 비공개(5)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행정지원과-28915(2026. 10. 7.)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55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원안동의
2026-56	행정지원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각 1부.
2. 조례 개정안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시2팀장

이선

감사관

전결 2026. 10. 7.

유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2073

(2026. 10. 7.)

접수 행정지원과-29132

(2026. 10. 7.)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s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56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조창휘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10. 7.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 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외 1건](일부개정안)

1. 행정지원과-28914(2026. 10. 7.)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행정지원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불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각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명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동계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2026. 10. 7.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8499	(2026. 10. 7.)	접수	행정지원과-29140	(2026. 10.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 이은경 담당자 조창휘
3.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4. 주요골자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론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농지법」상 농지대장 명칭 반영하여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농지법」상 농지대장 직접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은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 명확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